의안번호	2213950
의 뢰 인	신정훈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7.
추계번호	25F59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농어업분야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18.0억원, 2029년 385.9억원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총 1,775.7억원(연평균 443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○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연장: 3년간 -1.2억원(연평균 -0.4억원)

○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제1항): 3년간 -625.2억원(연평균 -208.4억원)

○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5조제1항): 3년간 -27.6억원(연평균 -9.2억원)

○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67조): 3년간 -1,121.7억원(연평균 -373.9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9조제3항)	−0.4	−0.4	−0.4		−1.2	−0.4
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−208.4	−208.4	−208.4		−625.2	−208.4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5조제1항)	−9.2	−9.2	−9.2		−27.6	−9.2
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67조)		−362.0	−373.8	−385.9	−1,121.7	−373.9
합 계	−218.0	−580.0	−591.8	−385.9	−1,775.7	−443.9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3항 (출원 취득 및 등록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)	○ 어업권·양식업권 출원 취득의 취득세 및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	○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융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3	안 제15조제1항 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4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조제3항 (출원 취득 및 등록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감면)	○	
2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)	○	
3	안 제15조제1항 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(제167조)의 경우 2026~2028년 법인지방소득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❑ (안 제9조제3항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○ (취득세) 2019, 2020년은 감면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3억원

○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간 감면액이 0.1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-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: 0.1억원

❑ (안 제10조제1항)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○ 2019년 236.3억원에서 2021년 260.3억원까지 증가, 이후 2023년 130.2억원까지 감소하고 있어 2019~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○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208.4억원

❑ (안 제15조제1항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다고 가정하고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(취득세) 향후 5년(2026~2030년)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다고 가정[1)]

○ (재산세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향후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2023년 기준 재산세 감면액(9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

❑ (안 제167조)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○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1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향후 5년간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음을 확인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어업권·양식업권 등 출원취득의 취득세 등 면제(안 제9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❑ (제도개요) 출원에 의해 취득한 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와 어업권·양식업권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
❑ (추계방법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○ (취득세) 2019, 2020년은 감면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3억원

○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간 감면액이 0.1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: 0.1억원

[표 2]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취득세	0	0	0.2	0.6	0.2
등록면허세	0.1	0.1	0.1	0.1	0.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0.4억원, 2028년 0.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.2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9조제3항)	−0.4	−0.4	−0.4	−1.2	−0.4
− 취득세	−0.3	−0.3	−0.3	−0.9	−0.3
− 등록면허세	−0.1	−0.1	−0.1	−0.3	−0.1

나. 농어업인 등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❑ (제도개요) 상호금융기관의 농어업인 융자 시의 융자담보물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

○ 감면액: 등록면허세의 50%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
❑ (추계방법) 2019년 236.3억원에서 2021년 260.3억원까지 증가, 이후 2023년 130.2억원까지 감소하여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208.4억원

[표 4]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36.3	252.4	260.3	162.9	130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, 각 년도

(2)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등록면허세는 2026년 208.4억원, 2028년 208.4억원 등 2026년에서

2030년까지 총 1,042.0억원(연평균 20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등록면허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어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−208.4	−208.4	−208.4	−625.2	−208.4

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5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❑ (제도개요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○ 감면율: 취득세 50%, 재산세 50%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
❑ (추계방법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○ (취득세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며, 최근 취득세 감면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
○ (재산세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추가 취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 변동소요도 크지 않으므로, 2023년 감면실적(9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6]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취득세	15.3[1)]	1.5	1.6	0.1	0
재산세	6.7	8.8	9.2	9.7	9.2

주: 1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정부비축기지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감면실적으로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해당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자주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재산세는 2026년 9.2억원, 2028년 9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7.6억원(연평균 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15조제1항)	−9.2	−9.2	−9.2	−27.6	−9.2

라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67조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특례

○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단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 0.9~1.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8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비교

구 분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 익금산입, 손금불산입 − 손금산입, 익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-비과세소득−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 손금불산입(기부등 등 8개 항목 1)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0.9%	0.9%
	2~20억원	1.9%	
	20~200억원		1.2%
	200~3,000억원	2.1%	
	3,000억원 초과	2.4%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❑ (감면실적)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020년 327.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.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28.9억원 수준

○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감면실적에 10%를 적용하여 산정

○ 2024년 특례실적 감소는 법인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9]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: 지방소득세, 2020~2024년(잠정)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감면실적	327.1	334.7	423.0	511.3	328.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

특례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○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0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−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억원)	세율[1] (%)	산출세액 (B,억원)	
합 계	4,215	59,145	−	605.3	−	1,116.7	−511.3
2억원 이하	1,181	618	0.9	5.6	1.0	6.2	−0.6
2~20억원	2,273	19,307		174.0	2.0	340.7	−166.6
20~200억원	753	37,307	1.2	403.2		731.1	−327.9
200~3,000억원	8	1,913		22.5	2.2	38.7	−16.2

주: 1)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,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특례실적을 조정

–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11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×D, 억원)	전체 (F=E×B, 억원)		1인당 (E'=C×D', 억원)	전체 (F'=E'×B, 억원)
합 계	4,215	59,145	−	−	−	1,116.7	−	−	1,057.7
2억원 이하	1,181	618	0.5	1.0	0.01	6.2	0.9	0.004	5.6
2~20억원	2,273	19,307	8.5	2.0	0.2	340.7	1.9	0.2	321.5
20~200억원	753	37,307	49.5		1.1	731.1		1.0	693.8
200~3,000억원	8	1,913	239.1	2.2	5.5	38.7	2.1	5.2	36.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3년 기준 11.5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12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실적 조정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−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−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−D)	
산출세액	605.3	1,116.7	−511.3	1,057.7	−452.4	−11.5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2023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평균 3.2% 증가함

[표 13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	2020	2021	2022	2023	2024 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27.1	334.7	423.0	511.3	328.9	–
	조정후 (A×[1−11.5%])	289.4	296.1	374.3	452.4	328.9[1)]	3.2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❑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소득세는 2027년 362.0억원, 2029년 385.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,121.7억원(연평균 373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67조)	−362.0	−373.8	−385.9	−1,121.7	−373.9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